

한두환 수의사 변호사의 법률칼럼 - 수의사의 생활법률 (8)

치료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한 두 환
 여강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
 today-we@hanmail.net



박건망씨의 반려묘 순둥이는 김명의 수의사의 명의동물병원에서 수술비 200만원의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박건망씨는 치료비를 잊어버리고는 치료비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다. 김명의 수의사는 단골 손님인 박건망씨에게 가끔씩 치료비를 지급해 줄 것을 이야기했지만 박건망씨는 지급해주겠다고 하고는 역시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김명의 수의사도 박건망씨가 명의동물병원에 내원할 때마다 이를 상기시켜 주었다.

한편 나주인씨의 반려견 멩밍이도 김명의 수의사의 명의동물병원에서 수술비 300만원의 수술을 받았다. 나주인씨는 같이 내원한 이채무씨가 자신에게 300만원을 줘야 하는데, 이채무씨가 자기 대신 수술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명의 수의사는 이를 승낙하고 이채무씨가 치료비를 지급해줄기를 기다렸지만 이채무씨는 지급을 미루기만 할뿐이었다.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의 신변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내심 수술비를 포기하게 되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우연히 나주인씨가 다시 명의동물병원에 내원하자 김명의 수의사는 3년전에 못 받은 수술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나주인씨는 당시에 이미 이채무씨에게 받기로 한 것이니 자신은 수술비를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김명의 수의사는 박건망씨와 나주인씨 또는 이채무씨에게 수술비를 받을 수 있을까?

수의사가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치료비를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채권에는 시간적인 한계인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멸시효란 채권의 수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의 기간이 완성되면 기존의 채권은 소멸해 버리는 것이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0년이 지나면 받을 돈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의사가 치료를 해주고 받을 수 있는 치료비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짧다. [민법] 제163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중략)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하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사’에는 한의사, 치과 의사 뿐만 아니라 수의사도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므로 수의사의 치료비는 적어도 3년내에는 청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3년이 지난 지금, 김명의 수의사의 각 사람들에게 대한 치료비 채권은 어떻게 될까?

1. 김명의 수의사는 박건망씨에게는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3년이 지나긴 했지만 김명의 수의사는 박건망씨에게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즉,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달라고 청구해온 것이다. [민법] 제168조에서도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하략)”

라고 규정하여 채권을 청구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은 그 중단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다시 계산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의 박건망씨에 대한 치료비 채권은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민법] 제168조가 규정하는 ‘청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청구서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즉,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명의 수의사의 박건망씨에 대한 치료비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며, 김명의 수의사는 박건망씨에게는 더 이상 치료비를 요구할 수 없다.

2.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김명의 수의사의 나주인씨에 대한 채권도 박건망씨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나주인씨에게는 더 이상 치료비를 요구할 수 없다.

3. 김명의 수의사는 이채무씨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김명의 수의사의 치료비는 원래 나주인씨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이채무씨에게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김명의 수의사는 이채무씨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이채무씨에게는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가. 이채무씨가 나주인씨 대신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것의 의미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 대신 이채무씨에게 치료비를 받기로 하였다. 이런 경우를 ‘채무인수’라고 한다. 채무인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원래 치료비를 부담하는 나주인씨의 부담이 완전히 이채무씨에게 넘어가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다른 하나는 나주인씨뿐만 아니라 이채무씨도 같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이다. 그렇다면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둘의 구별은 법률행위 해석에 의해 결정할 것이나,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를 위

해 병존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면책적 채무인수’임을 확실하게 표시한 경우가 아니면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는 것이다. 나주인씨는 자기 대신 이채무씨가 치료비를 낼 것이라고만 했을 뿐 이로 인해 자신은 치료비 책임이 없다는 것까지 표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에게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나.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를 대신해서 이채무씨에게 청구할 수 있다.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나주인씨는 이채무씨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 이런 경우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를 대신해서 이채무씨가 나주인씨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요구할 수 있다. 즉, 김명의 수의사가 이채무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채무씨가 나주인씨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속히 지급하라는 것인데, 이 때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지급할 상대로 나주인씨가 아니라 김명의 수의사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을 지급할 상대가 다소 엉뚱해 보이지만 우리 법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채권자대위’라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다. 김명의 수의사는 나주인씨를 대신해서 이채무씨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김명의 수의사가 나주인씨에게 요구할 수 있는 치료비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채무자(나주인씨)만 이익을 얻는 것이라 하여, 제3채무자(이채무씨)는 채무자(나주인씨)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김명의 수의사의 나주인씨에 대한 치료비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는 이채무씨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는 이채무씨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4. 거래관계는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수의사의 일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비는 3년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두로 청구하거나 청구서를 보내는 일반적인 방식은 3년이라는 소멸시효를 중지시키지 못한다. 김명의 수의사는 이채무씨와의 복잡한 거래관계 덕분에 치료비를 받을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거래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다. ☹

(칼럼에 실을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법률문제를 겪으셨거나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자의 이메일로 상담글을 보내주세요. 상담글에 답변도 드리고, 익명의 칼럼 사례로서 실고자 합니다. 어떠한 주제라도 괜찮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